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가합20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제26998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나. 별지1 부동산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4. 11. 30. 부기 1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다. 별지1 부동산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1. 6.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접수 제27001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라. 별지1 부동산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1. 1.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접수 제27000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원고 승소

재판장판사김한성

판사김영아

판사이민령

별지

1) 원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이는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1. 6.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